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2024. 4.

국 토 교 통 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I. 과업개요

1. 과업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2. 과업의 목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자연 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재해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어의 정의

- (1)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용역기관”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 (2)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기관”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에 따른다.

4.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로 하되, 발주기관과 용역기관의 합의하에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상 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 평가 후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등 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 위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원
- 면적 : $A=1,382,725\text{m}^2$ (부지면적 및 절성토 사면 포함)

* 해당 면적은 기본계획 협의(안) 기준으로 기본계획 진행 단계에서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위치·면적 변경에 따른 용역금액 조정은 없음

6. 준거 기준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호, '21.1.12.)에 따르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II.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 1) 해당과업의 위치는 주로 산지지형으로 공항개발에 따른 인공·자연 비탈면 노출이 불가피한 바, 산사태, 토석류 등 이와 관련된 재해영향 요인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업면적(접근도로 포함), 위치 등이 조정 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내용 및 발주처 요구 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
- 3)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를 조사·검토하되, 가급적 신뢰성 있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인용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발행 시기 등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세부내용

1) 작업계획의 수립

- (1) 전문 분야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 (2) 자료수집, 조사일정, 인력투입계획 수립 등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2)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본 과업과 연계하여 기술한다.

(2) 계획의 내용

- 계획명, 위치, 계획규모,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기술하고, 위치도와 계획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 계획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 계획지구의 시설별 면적·구성비 및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시한다.

(3) 계획의 추진경위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단계까지의 추진경위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후 계획수립 완료 단계까지의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3) 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검토대상지역은 행정계획(일반사업계획) 개념의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과업위치, 과업위치의 상류유역 및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검토 대상지역은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상세 검토에 따라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2) 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범위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함과 아울러 검토 대상지역 설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검토 대상지역의 설정시에는 제외되는 주변 지역도 제외되는 사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 (3) 검토 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검토 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상류 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부가적으로 나타낸다.

4) 기초현황 조사

(1) 재해발생 현황 조사

- 관련 문헌조사 및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하여 검토 대상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조사한다.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의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최근 10개년 계획지구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현황을수룩하고, 재해대장(해당 시·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을 활용하여 읍·면·동 위주로 계획지구와의 연관성을 제시

- 계획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 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
-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하여 재해현황을 수록하고, 개발중·후의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예측한다.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에 발생시각, 발생원인, 붕괴범위 등을 표기하고, 강우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시 강우 자료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2)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조사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지자체의 위험지역 지정·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 대상지역 내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관련 계획의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3) 방재시설 현황조사

- 해당 계획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계획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 현재 시설물의 설치 또는 정비 시기, 노후화 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4) 현장조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유역 조사, 배수계통 조사, 사면현황 조사, 지반현황 조사 및 주민탐문 조사 결과를 수록한다.
 -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계획지구 유역과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제시하고 우수 흐름과 관련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현장 조사하여 현황도로 수록한다.
 - (비탈면현황 조사) 계획지구 및 대상유역 내의 자연비탈면과 기 조성된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를 현장 조사하여 제시한다.
 - (지반현황 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계획지구의 인근지역 지반 조사 사례를 수집하여 수록한다.
 - (주민 탐문조사)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계획지구 및 인근 지역(군위·의성)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거주년수 10년 이상 지역주민 3명 이상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와 조사지역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단, 거주년수 10년 이상 지역주민 3명에 대한 주민탐문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유를 기술한다.

(5) 조사결과 종합

- 조사결과와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탐문조사 양식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전안전부 고시2021-1호)'을 활용한다.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수립

- (1) 조사된 검토 대상지역 내 재해위험 지역(재해발생 지역, 재해 위험 지구 등), 개발계획 지구, 방재시설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출한다.
- (2) 중첩된 지도((1)의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3) 재해유형별 재해 위험요인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계획의 중점검토 재해유형(토석류, 산사태 등)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 (4) 필요 시 영구저류지 및 임시침사지점 저류지의 위치와 규모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노후화된 방재시설 개선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안한다.

6) 부록내용 및 기타

- (1) 해당 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수행 법인에 대한 법인명 (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 (2)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토질 및 기초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번호, 방재교육 인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 (3)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 (4) 발주기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업체 간의 계약서(재해영향성검토 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본을 수록한다. 또한,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 (5)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6) 검토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참고자료는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총괄요약표 》

기본 업무	단위 업무	세부수행 업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계획의 개요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의 배경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나. 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대상 유형 제시 •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 기간, 소요예산 •계획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계획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가. 검토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행정계획(일반사업계획)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4. 기초현황 조사	가. 재해발생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나. 관련계획 및 지구지정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다. 방재시설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기본 업무	단위 업무	세부수행 업무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재해, 비탈면재해, 토사재해(<u>산사태, 토석류 포함</u>), 바람재해, 기타재해 등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유형별 저감방향을 계획에 반영토록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저감방향을 제안 ●개선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시 추가 제안
6. 부록내용 및 기타	가. 부록내용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법인명,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 기재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 성명, 주민번호, 참여기간, 업무내용, 자격증번호 등 기재 ●계약서 사본수록,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 업체현황 제시 ●참고문헌 작성 등

3. 평가기준

- 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재해영향성검토서에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영향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3)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 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본 용역을 완료하여 본 용역 결과가 당해 기본계획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본계획용역 완료 전까지 본 용역 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서 등의 작성 방법

- 1) 재해영향성검토서 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2) 재해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 3) 재해영향성검토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재해영향성검토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 5) 구체적인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방법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참고한다.

5.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 1) 재해영향성검토 책임기술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단,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 책임기술인은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성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인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려는 자는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 1)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2)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7. 기타사항

-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 중 “용역기관”의 과실로 인적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시 “용역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3) 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과정(과업 종료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동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4)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 5)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용역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7)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이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9)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 10) 기초조사, 기초현황 조사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과업 완료 전 3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쇄물 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17부(사전검토 2부, 협의용 10부, 최종5부), 조치계획서 10부, 현장조사 사진첩 1식, USB 3set
- 2) 기타 아래의 관련서류(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에 한함) 1식
 - (1) 관계기관 협의서류
 - (2) 현안사항 관련서류
 - (3) 재해영향성검토 관련서류
 - (4) 용역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문서
 - (5) 기타 용역수행 시 발생된 문서일체

IV. 보안대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①의 보안성 검토 사항을 과업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⑥”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6.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7.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8.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10.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1.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V.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 총 150일(5개월)

세 부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				
	1월	2월	3월	4월	5월
1.작업계획 수립	■				
2.계획의 개요	■				
3.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검토		■			
4.기초현황 조사		■			
5.재해유형별 위험 요인분석 및 저감 방안 제안			■	■	
6.평가서 작성				■	
7.평가서 협의 및 보완					■

* 예정공정표는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